

## 충청북도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도 소속 공무원중 대상자를 국·내 외 대학원 석·박사과정 및 단기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산업개발분야
4.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분야

제4조(장학생 선발) 장학생은 도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자
2. 대학원장의 합격통지를 받은자
3. 입학 및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이 정하고 있는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석사과정은 2년6개월, 단기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기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해당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 불량통보를 받은 경우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재학중 비위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년한이 경과 되기 전에 퇴직하고자 할 때

제7조 (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 기간동안 도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 년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도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도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u>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u>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함은 도 소속공무원중 대상자를 대학원 석사과정 및 단기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함은 도 소속공무원중 대상자를 국내외 대학원 석.박과정 및 단기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p>
<p>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등록금의 <u>일부만</u>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등록금의 <u>일부를</u>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3. 12. 1.

제 안 자 : 김경희 위원회 6인

## 1. 수정이유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국내 약간연수에 국한되지 않고 국외연수까지도 포함하여 석.박사 과정 및 단기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시켜 다가오는 지방화시대에 대비 전문인 육성의 장을 여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2. 수정 주요 글자

- .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 →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대학원 위탁교육  
(안제1조)
- . 도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대학원 석사과정 → 도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국.내외대학원 석.박사과정 (안제2조)
- .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외 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제5조①항)

## 충청북도 공무원장학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을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으로 한다.

안제2조 중 "도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대학원 석사과정"을 "도소속 공무원 중 대상자를 국.내외 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한다.

안제5조①항 중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를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과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체재비등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도재정상 곤란한 상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 충청북도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라 함은 도 소속 공무원중 대상자를 대학원 석사과정 및 단기 과정에 입학시켜 전문지식을 습득 연수하게 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 우수한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로 한다.

1. 지방행정(지방재정)분야
2. 지역개발분야
3. 산업개발분야
4. 기타 지방행정 관련 분야

제4조(장학생 선발) 장학생은 도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자
2. 대학원장의 합격통지를 받은자
3. 입학 및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대학원에서 매학기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도 재정상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이 정하고 있는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석사과정은 2년6개월, 단기과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기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 해당교육기관장으로부터 성적 불량통보를 받은경우
2. 정학, 휴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경우
3. 재학중 비위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년한이 경과 되기 전에 퇴직하고자 할때

제7조 (장학생의 의무) ① 장학생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탁교육기관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지사는 위탁교육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한 기간동안 도에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 년한을 단축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